(재)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0109-7호

2022년 3차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(벤처나라 지정) 추천지원 공고

(재)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**조달청**에서 **운영**하는 **『벤처나라』**에 **『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』 지정 추천지원**을 위한 계획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23년 1월 10일

대구광역시장

(재)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Ⅰ 사업목적

○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벤처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 제품을 '조달청 벤처나라' 에 추천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 판로 확대

○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등록 및 판매 노출증대로 벤처기업의 매출증대

벤처나라 (http://venture.g2b.go.kr)

■ **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**하고 **공공구매판로를 확대**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**벤처.창업기업의 상품**을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 판매하고자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**전용 상품몰**

■ 지원내용 : 벤처창업 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, 벤처나라 홍보 카달로그 제작 및 배포/온오프라인 홍보, 상품 동영상 제공,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시 벤처나라 전용부스 운영,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벤처나라 실적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, **SGI이행보증모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**,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관급자재 선정시 벤처나라 등록제품 우대

【인증마크】

II 지원개요

○ 지원규모 : 2022년 15개 기업 추천 예정 (별도 비용 無)

○ 지원기간 : 2022. 10 ~ 2023. 04

○ 지원대상 : 대구에 사업장을 둔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

- **(벤처기업)**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
  (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만료일이 '23.04.30 이후여야 함)
- **(창업기업)*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(사업자등록증 기준 '17.01.01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)

2023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변경사항

① (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) 국내 OEM인 경우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,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

※ 공공구매종합정보(https://www.smpp.go.k)-정보조회-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조회가능

② **창업기업확인서 첨부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'창업기업'제품으로 납품 가능**

※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(https://cert.k-startup.go.kr)에서 발급(10일 소요)

③ **청년기업(대표자가 만39세 이하)은 지정심사시 가점 1점 부여**

신청 제외대상

-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관련 서류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
- 휴·폐업, 부도, 파산 및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인 경우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
- 해당 업체가 등록한 우수조달물품,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받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에 속하는 상품인 경우
- 음·식료품류, 동·식물류, 농·수산물류, 무기·총포·화약류와 그 구성품, 유류 및 의약품(농약),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
-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의 지정이 취소된 상품이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

○ 지원분야 : 직접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(OEM) 물품 및 서비스

- 디지털/가전, 컴퓨터/주변기기, 자동차/공구/기계, 전문장비, 건강/의료, 교육용품, 시스템/소프트웨어, 공사용자재, 기타아이디어상품 등
- **국민안전물자 14종**에 속하는 경우, 품질 인증 및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

①체육시설탄성포장재 ②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③미끄럼방지포장재

④도막형바닥재 ⑤철제가드레일 ⑥철제도로중앙분리대 ⑦철제교량난간

⑧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⑨알루미늄교량난간 ⑩낙석방지책 ⑪차선분리대

⑫흙콘크리트 ⑬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⑭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

※ 제품안전정보센터(https://www.safetykorea.kr)-제품안전대상품목에서 조회 가능

○ 지원내용

- 벤처나라 내 상품등록 및 판매를 위한 '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' 후보 추천
- 신청서, 상품설명서 등 서류 및 벤처나라 운영 프로세스, 등록 방법 등 컨설팅

※ 선정된 추천기업의 경우 조달청에서 하는 적합성 심사시 기술·품질평가 면제

- 지정 이후,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완료해야 지정 효력이 발생

III 선정 방법

○ 선정평가 : 기술 및 사업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공판로촉진위원회 개최를 통한 기술·품질 서면평가

○ 선정기준

- 기술평가 : 기술개발의 필요성, 기술의 난이도, 혁신성, 적용성, 차별성 등
- 품질평가 : 품질·성능 신뢰성, 편의성, 안정성, 효율성, 신뢰성, 내구성, 절약성, 보안성, 환경친화성 등
- 평가면제 : 「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」 제8조 내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를 면제하고 바로 추천

○ 결과통보 : 개별 이메일통지

Ⅳ 접수방법

○ **접수기간** : 공고일 ~ 2023. 2. 9(목) 까지

○ **접수방법** : ※ 이메일 접수 + 우편/방문접수 모두 진행해야 접수완료

❶ 사업공고➡ 붙임서류 확인 및 다운로드

❷ 신청서류 작성 후 직인날인하고 첨부서류 준비

❸ 신청서류, 첨부서류를 1개 파일로 합쳐서 pdf로 스캔

❹ eunhye@dgtp.or.kr로 접수 후 담당자 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

※ **이메일제목 : 벤처나라 추천지원 신청_기업명**

❺ 신청서류 원본과 첨부서류 1부를 집게로 철하여 방문/우편접수

※ 제본 및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

연번	제출서류	서식	비고
1	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추천을 위한 서류 제출서 원본	서식1	필수
2	신뢰서약서 원본	서식2	필수
3	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서 원본	서식3	필수
4	(개인)사업자등록증 사본 (법인)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	-	필수
5	벤처기업확인서(벤처기업일 경우), 창업기업확인서(창업기업일 경우) 사본	-	해당시
6	상품설명서 원본	서식4	필수
7	법정 및 품질인증제품 납품 확약서 원본	서식5	필수
8	기술.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 사본(인증서, 관련 종합평가보고서)	-	해당시
9	기술 평가 증빙자료(특허/실용신안 등록증 및 등록공보) 사본	-	해당시
10	품질 평가 증빙자료 사본 (품질인증서, KC인증 등 품질관련 인증서,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, 공인시험성적서) ※ 국민안전관련 물자의 경우, 품질인증서나 공인시험성적서 필수 제출 ※ 안전인증대상, 안전확인대상,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서류 필수 제출 ※ 인증서, 공인시험성적서 등이 없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필수 제출	서식6	필수

※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시 입찰참가자격 및 직접생산여부는 확인하지 않음
다만, **지정 후 상품 등록시 제조업체등록-물품식별번호 또는 공급업체등록-OEM (주문자상표부착)물품식별번호 필수**

Ⅴ 접수 및 문의처

접 수 처	이 메 일	eunhye@dgtp.or.kr
	방문/우편	[41256]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9층 연구개발지원센터
담 당 자		**배은혜 선임연구원 (Tel. 053-757-3778)**

Ⅵ 추진일정

사업공고/접수	공공판로촉진 위원회 평가	추천대상 선정	조달청 추천
1/10(화) ~ 2/9(목)	2/13(월)~2/17(금)	~ 2/21(화)까지	~ 2/24(금)까지
대구TP	대구TP	대구TP ⇒ 대구시	대구시 ⇒ 조달청

상품등록 및 지정서 발급	적합성 심사 및 지정결과 발표	벤처나라 온라인신청	전문가컨설팅
‘23. 5월 초	4/3(월)~4/28(금)	3/2(목)~3/31(금)	2/27(월)~3/17(금)
기업 ⇔ 조달청	조달청	기업⇒ 조달청	전문가 ⇔ 기업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Ⅶ 평가면제 대상

※제출마감일 기준, 인증 및 발급받은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평가 면제 가능

기술·품질평가 면제대상(관련규정 제8조)

① 성능인증(EPC)제품
② 신제품(NEP)
③ 우수품질소프트웨어인증(GS)
④ 신기술(NET)제품 ※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인정한 경우만 해당
⑤ 녹색인증제품
⑥ ICT융합품질인증제품
⑦ 창조경제혁신센터 BE-GOODS지원사업 선정제품
⑧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·품질 평가면제를 인정한 제품
※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면제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)

기술평가 면제대상(관련규정 제9조)

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
②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
③ 공공기관 개발선정품(단,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)
④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(공공부문)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
※ 단,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
⑤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

품질평가 면제대상(관련규정 제10조)

① 우수재활용인증제품(GR)
② 환경표지(환경마크) 제품
③ 성능인증(K마크)제품
④ 고효율에너지 인증표시 제품
⑤ 품질보증조달물품
⑥ 지능형로봇 품질인증(R마크)제품
⑦ 보건제품 품질인증(GH)제품
⑧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인증 제품
⑨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